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2. 입소정원 : 61명

3. 입소계약

- 가. 계약대상자: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나. 계약기간: 입소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기한다.
- 다. 계약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가.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20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나.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 요양이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 나.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 다.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라. 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 마.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미

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50%를 산정한다.

바.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등급 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

(단,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 외박수가는 일을 기준으로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 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아. 시설입소자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사항은 시설입소자 표준서비스 제공 지침에 따른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감염성 질환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